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4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의자 :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4조)

라. 재정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 다. 부서협의 : 건설관리과
-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